

##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

고객님의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사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,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후속 조치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
**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**

☎ 고객센터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탈 [파인] ([fine.fss.or.kr](http://fine.fss.or.kr))

**②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정지요청, 사고신고**

☎ 계좌 통합조회 및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([www.payinfo.or.kr](http://www.payinfo.or.kr))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('내계좌 지급정지' 이용 시 지급정지 해제는 각 금융회사로 문의)

**③ 휴대폰 개통여부확인**

☎ 명의도용방지서비스([www.msafes.or.kr](http://www.msafes.or.kr))

**④ 문자메시지 URL을 클릭하여 악성앱 등을 설치한 경우**

☎ 앱 삭제 및 휴대폰 기기 제조사 AS센터 방문하여 상담 안내

**⑤ 신분증(사본포함) 유출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**

☎ 주민센터 방문, 또는 민원24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), 도로교통공단([safedriving.or.kr](http://safedriving.or.kr))

**⑥ 분실신고(보안매체/카드/통장/인증서 폐기)**

**⑦ 비대면 금융사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활용 (선택)**

☎ 피해가 발생한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에서 배상 상담 및 접수 가능  
(단, 본인 직접 이체 건 등은 적용 제외)

**※ [참고] 비대면 금융사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금융회사 자율배상제도 활용**

- '25.1.1.부터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2금융권 자율배상 제도('비대면 금융사기 책임분담기준')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-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('통신사기피해환급법')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결정액을 제외한 피해금액에 대해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은행이 배상할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.

- 피해가 발생한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상담 및 배상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(단,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등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.)